

의안번호	제 호
의결 연월일	20 . . . (제 회)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주의 개선을 위해, 보장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지원대상자의 동의 없이 직권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을 신청하는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 간주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의 발굴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0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직권 신청 대상의 범위 및 신청 간주의 요건이 되는 사회보장급여를 규정하는 한편,

보장기관의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 발굴을 지원할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에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가족 요양보호사에 관한 정보,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관한 정보 등을 추가하고,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2027.3.19.)됨에 따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 또는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 관련 업무를 위탁 받은 기관을 추가 및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거나 요청하는 자료에 지역사회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추가하려는 것임.

4. 주요토의과제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가보훈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을“(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조제3항 전단”을 “제5조제3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제5항 및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3. 지원대상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4. 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⑥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지 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4. 「장애인연금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여
5.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
6.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제2조제7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을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제1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관한 정보

제19조제1항제7조(중전의 제6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한다.

별표 2 제5호러목을 버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러목 및 머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러.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보험자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수급자(같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된 사람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해당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의 정보 및 해당 수급자의 가구 정보

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상이호수 및 상이등급에 관한 정보

별표 3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기관

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중앙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

나. 같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역장애인지역사회통합지원센터(이하

“지역통합지원센터”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역통합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다. 같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거생활 서비스 제공기관
별표 4 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별표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 및 주거 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주거 전환 지원 등에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같은 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의 신청에 필요한 정보

나.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대기목록 작성에 필요한 정보

다.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립조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립육구조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라.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정보

마.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정보

바.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개인별 지역사회 자립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정보

사. 같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주택 제공에 관한 정보

아.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주거생활서비스 제공에 관한 정보

자. 같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자립 지원 상황 평가·보고에 필요한

차.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주거 전환 평가에 필요한 정보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7년 1월 2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3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7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안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①·② (생략)	제2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및 고지 방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5조제3항 전단에서 “심신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5조제3항제1호-----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신설>	④ 법 제5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기상황”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최근 1년 이내에 법 제9조의2 제1항제1호에 따라 보장기관의 장이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
	2.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가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가구의 주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

현행	개정안
④ (생략) <u><신설></u>	3. <u>지원대상자가 최근 1년 이내에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고독사위험자로 3회 이상 발굴된 경우</u> 4. <u>지원대상자가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로서 같은 법에 따른 긴급지원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장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⑥ 법 제5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보장급여”란 다음 각 호의 사회보장급여를 말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지급여 3. 「장애인복지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및 같은

현 행	개 정 안
⑤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장 기관의 업무담당자가 신청인이나 지원대상자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할 때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구두 안내 등의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u>4. 「장애연금법」 제5조 각 호에 따른 급여</u> <u>5. 「기초연금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기초연금</u> <u>6. 「아동수당법」 제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지급하는 아동수당</u> <u>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회보장급여</u>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기관등	⑦ 법 제5조제6항----- ----- ----- ----- . ----- ----- ----- ----- --. 제5조(금융정보등의 제공 등) ① 법 제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현행	개정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 ----- ----- ----- ----- ----- ----- ----- ----- ----- ---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배우자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u><단서 신설></u>	1. ----- ----- ----- ----- ----- 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금융정	② ----- ----- ----- ----- -----

현행	개정안
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와 그 부양의무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u><단서 신설></u> 2. ~ 4. (생략) ③ (생략)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법 제34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 5. (생략) <u><신설></u>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료 보존대상자와 가족관계로 함께 사회보장급여를 수급한 자의 정보 ② (생략)	-----. 1. ----- -----, <u>다만,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로 한다.</u> 2. ~ 4.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정보) ① ----- ----- ----- ----- -----.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u>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관한 정보</u> 7. ----- 제6호----- ----- ----- ②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급여기준과

연 락 처

(044) 202 - 3144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사회보장급여법 제22조의2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는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 중지를 신청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및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에 대해 중지할 수 있음. 그러나, [별지 제1호의2서식]에서는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을 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5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5년마다 신청인이 동의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이에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맞춤형 급여 안내의 유효기간을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규정하여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맞춤형 급여 안내 신청서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지원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지원대상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가족사항	세대주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휴대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가구원별 안내방법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 문자메시지서비스 [[☐] 전자우편 [[☐] 기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						동의 (√ 표시합니다)
1. 개인정보 활용 목적: 보건복지부장관과 보장기관의 장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한 지원대상자와 그 가구원의 사회보장급여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2.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수급가능성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출입국·병무·보호급여·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 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포함합니다)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3.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유·파기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보장기관의 장 귀하

유의사항
1. 맞춤형 급여 안내는 주기적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을 확인하여 그 결과를 안내하는 제도로, 실제 사회보장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2. 맞춤형 급여 안내가 종료되는 기한은 별도로 없으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가 중지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맞춤형 급여 안내를 중지하려는 경우에는 맞춤형 급여 안내 중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맞춤형 급여 안내를 통하여 안내되는 사회보장급여의 수급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는 정보통신망에서 조회된 공적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이므로, 실제 사회보장급여의 신청에 따른 조사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a/㎡) 또는 중질지(80a/㎡)]